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19

발의연월일: 2024. 1. 8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선교·김승수

이종욱 • 김소희 • 고동진

박충권 • 권영진 • 박수영

강대식 · 송언석 · 정희용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,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건설업·부동산업·금융업·보험 및 연금업·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,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·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또한,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

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,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%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.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,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%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의4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건설업, 부동산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"을 "일반 유흥 주점업 등"으로하고, 같은 조 제1호 후단 중 "사업"을 "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기업은 주된 업종의 변동 없는 것으로 보며, 그 밖에 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의4(명문장수기업의 요건)	제62조의4(명문장수기업의 요건)
명문장수기업은 <u>건설업, 부동산</u>	일반 유흥 주
업,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	점업 등
용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	
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	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	
추어야 한다.	
1.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	1
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	
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	
업. 이 경우 <u>사업</u> 개시와 계	<u>기존 업종에 다른</u>
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	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기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
	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
	80 미만인 기업은 주된 업종
	의 변동 없는 것으로 보며,
	<u>그 밖에 사업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